

<p>제2023-48호 2023년 5월 23일(화)</p>	<p>시  보</p> <p>여수시</p>	<p>시 정 지 표</p> <p>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홍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기 타

- 여수시 규칙 제813호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제6회 여수시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립도서관
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
공포한다.

2023년 5 월 23 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규칙 제813호

붙임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 1부

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④ 본문 중 “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, 반납된 도서는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하여 3일 후 재 대출이 가능하다.”를 “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연장 신청 시 해당 도서가 다른 회원에게 대출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1조(자료 대출) ④ 대출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, 반납된 도서는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하여 3일 후 재 대출이 가능하다.</p>	<p>제11조(자료 대출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 신청 시 해당 도서가 다른 회원에게 대출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.</p>